

## 4가지 후견제도(2)

### 편집자주

성년후견제도는 독일은 1992년에, 일본은 2000년에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이들보다 상당히 늦은 201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은 아직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벌써 시행 5년을 맞았습니다. 인기 주말드라마에도 소개되어 국민적 관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이현곤 변호사님께서 성년후견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考試界』에 몇 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독자분들께 一讀을 권해 드립니다.



### 이 현 곤

- 대구 능인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39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 제29기)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
-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
- 2014. 2. 변호사 개업
- 現 서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개정민법은 후견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네 가지 종류로 나누었다. 당사자들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다. 각각의 후견유형 내에서도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와 본인의 상태, 필요성을 고려하여 후견의 내용과 범위를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한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에 관하여도 법원이 직권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종전처럼 법정순위에 따라 후견인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 친족뿐 아니라 제3자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후견이 개시된 이후에도 법원은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후견을 감독하게 하거나 아니면 법원이 직접 후견인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원이 감독을 행하는 경우 후견

인은 필요한 경우 후견사무 수행에 있어서 법원의 사전허가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하고, 또 사후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후견제도 하에서 법원은 재판기관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목적은 후견사무가 본인의 복리를 위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다. 개정민법의 각 후견유형을 요약해보면 표와 같다.

그 중 어떤 유형의 후견을 선택할 것인지는 후견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선택할 것이지만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피후견인의 상태를 확인하여 보다 적합한 유형의 후견유형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후견을 이와 같이 유형

## \* 각 후견유형의 비교 \*

유형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개시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의 후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으로 제한됨	법원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한됨	행위능력 제한되지 않음	행위능력 제한되지 않음
후견인의 권한	포괄적인 취소권, 대리권	법원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의 동의권, 대리권	법원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의 대리권	계약에서 정한 대리권

별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안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후견의 내용과 범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우리 후견제도의 특징이다. 이러한 입법방식은 한편으로는 당사자로 하여금 다양한 선택을 보장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후견의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렵게 될 수 있는 단점도 분명 있다.

후견의 유형 중에서 본인의 행위능력을 가장 많이 제한하고 후견인의 권한이 큰 것은 성년후견이고, 그 다음이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순이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은 그 내용과 범위가 법률과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를 법정후견이라고 하여 임의후견과 구별하고 있다. 임의후견은 그 내용과 범위를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정하고 후견인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법정후견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법원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임의후견이라고 하여 모든 내용을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 사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성년후견은 본인의 행위능력이 포괄적으로 제한되고 후견인은 취소권과 대리

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본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후견인은 법원이 지정한 권한범위 내에서 동의 권과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며 후견인은 특정한 사무의 범위와 기간을 지정받아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의후견은 본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으며 후견의 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후 후견 청구 건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오고 있는데,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이 청구된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치매 등 노인이 가장 많고, 발달장애,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청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이현곤 저

###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전면개정판)

(크라운판/양장/462면/38,000원)

성년후견제도는 치매노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하여, 일상생활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제도이다. 필자는 서울가정법원에 근무하면서 대법원의 성년후견준비 TFT에 참여하여 성년후견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과 대법원 규칙등의 개정 작업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2013. 7. 1. 성년후견제도가 본격 시행된 때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사건들의 재판을 담당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성년후견지원 사업에도 참여하였다. 이런 경험의 축적으로 변호사 개업 이후 많은 후견심판 청구사건들을 대리하고, 직접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으로 활동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사례들을 이 책을 통해 독자들과 공유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사항들의 생각을 이 책을 통해 정리하였다. 성년후견제도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한번쯤 그 필요성을 고민하게 하는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기능하는 제도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의 개정판을 펴내며 성년후견제도가 그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개인적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